

광주광역시서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행정규제개혁에서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고 자치경쟁력 제고에 저해되는 각종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함에 따라
- 현행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상의 구민창안서 제출수단을 확대하고 창안서 미반환 규정을 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2. 주요골자

- 창안서 제출수단 규정 : 직접, 우편 → 직접, 우편, 인터넷, FAX 등
(안 제4조 제2항)
- 창안서 미반환 규정 : 반환하지 않는다 → 창안 제출자가 요구시 반환하다
(안 제6조 제2항)

3. 검토의견

우리 구에서는 구정 전반에 관한 주민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참여의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민창안운영조례를 제정하여 구민창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에서 주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폐지·완화토록 함에 따라, 현행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상의 구민창안서 제출수단을 확대하고 창안서 미반환 규정을 완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첫째, 안 제4조 제2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4조 제2항에서는 창안서의 제출수단을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하여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보통신매체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의사전달의 수단을 제한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만 열거하는 것은 이러한 변화추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민창안제도가 구정전반에 관한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참여의 민주적인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민들이 보다 용이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 본다면 창안서의 제출수단을 제한·열거할 것이 아니라, 개정안처럼 이를 확대·예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안 제6조 제2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 제2항에서는 제출된 창안서 등은 채택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가치의 생산을 중심으로 경제·사회구조가 변화, 발전되고 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수집, 정리, 보관 및 전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당연

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정보의 정정, 사용중지, 봉쇄,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자기정보관리통제권)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자진해서 제출하는 자료라 할지라도 개인으로부터 자료의 반환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출된 창안서 등은 채택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례 제6조 제2항에 단서규정을 추가 신설하여 “다만 창안제출자가 요구시 반환한다”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를 지양하고 단순히 창안서 제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창안서 반환의무를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은 문제가 있고, 이를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보다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조례 제6조 제2항을 “창안서 제출자가 제출된 창안서 등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 생각합니다.